

<참 조>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강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25일 김포시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2일
다. 상정일자 : 2002년 5월 2일
라. 의결일자 : 2002년 5월 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2001. 4. 6. 행정자치부령 제130호)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입니다.

나. 주요골자

1) 투자심사 대상범위를 변경조정(안 제2조)

- 자체심사(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 이상 30억원 미만)
- 도심사(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30억 이상 200억원 미만)

2)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며,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심의위원 교체(안 제4조)

3) 투자심사의 실시절차를 변경조정(안 제5조)

- 상반기 심사(2월 20일까지 → 4월 30일까지)
- 하반기 심사(7월 20일까지 → 10월 15일까지)

4) 재심사의 강화를 위해 자체 투자심사 후 늘어난 사업비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을 재심사 대상으로 신설(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이정찬)

○ 본안건은 2001. 4. 6. 행정자치부령 제130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과 경기도의 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의거 투자심사 대상범위를 변경 조정하는 등의 사항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이 중 시·도 의회 심사대상 사업을 확대함과 위 지침에 의거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실시함은 시·군·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시·도의 통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통제기능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으며,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위원의 구성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코자 하는 바에 대하여는 가시적 효과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수정되어야 한 사항 : 안 제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재정운영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년 3월 30일, 1995년 11월 30일, 1999년 4월 30일, 2001년 9월 15일>

8.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35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4. 질의·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p>김창집 위원)</p> <p>○ 의원의 참여로 시의 전반적 흐름을 고려할 수 있고 의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보는데?</p>	<p>기획담당관 정계성)</p> <p>○ 중앙과 연계된 사항임. 의원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님. 전문성이 있으면 참여시킬 수 있음.</p>
<p>한규태 위원)</p> <p>○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예산 의결권은 의회에 있음. 의원을 배제하고도 의뢰사업을 확대함은 단체장과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도지사가 시·군을 더 귀속시키려는 것 아닌가?</p>	<p>기획담당관 정계성)</p> <p>○ 투융자 심사 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것임. 도비를 주면서 도의 의지대로 추진하려는 것이므로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올 것임.</p>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안 제8조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호를 현행에 맞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8호"로 함.

7.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